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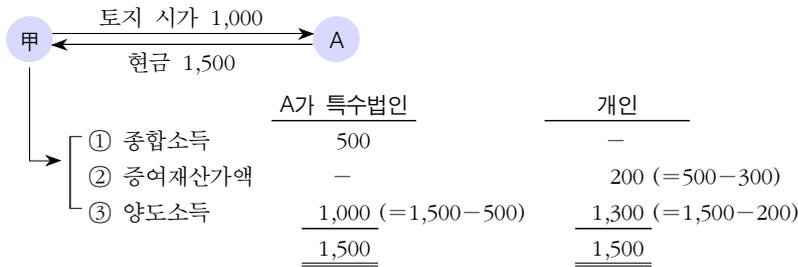
10-7 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과세방법

거주자가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시가까지는 당연히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이지만, 시가초과액의 과세방법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 ① 종합소득세 과세(∵ 특수관계법인에 고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은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자에 대한 사외유출 소득처분이 발생함 → 양도자의 종합소득으로 과세)
- ② 증여세 과세(∵ 증여세대상 저가양수·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 ③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위의 어느 방법으로 과세하여도 타당할 것이지만, 현재 세법은 ① → ② → ③의 순서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 고가양도



참고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의 문제점

A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에는 A법인에게 의제기부금규정이 적용되어 A법인이 거주자 甲에게 비지정기부금 200(=1,500-1,000×130%)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된다. A법인은 비지정기부금 200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00 기타소득'으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甲에게는 200의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기타소득 과세액을 甲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 기타소득 과세액 - 증여재산가액